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m ²		건물 : m ²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